1. 지역, 지구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, 령30조)

국토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함

1.1 용도지역 지정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)

- 지정/변경을 도시/군 관리계획으로 결정

| 3 | 3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존에 필요한 지역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전관리지역 2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(농림지역으로 지정이 어려운 지역) 계획관리지역 (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, 제한적 개발지역) | | |
| 주거지역 (거주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) 상업지역 (상업 및 업무의 편익 증진이 필요한 지역) 공업지역 (공업의 편익 증진이 필요한 지역) 녹지지역 (자연환경/녹지/산림보호, 보건위생, 보안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에 필요 | | 상업지역 (상업 및 업무의 편익 증진이 필요한 지역) |

1. 지역, 지구

1.2 용도지역 세분(국토계획법)

- 주로 용도 규제가 목적, 중복 지정 불가
- 통일된 최소한 기본 생활권 구분

| 1 | 주거지역 | 전용(1종-단독, 2종-공동) (양호한 주거환경 필요지역) 일반(1종-저층, 2종-중층, 3종-중·고층) (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지역) 준주거 (주거 기능 위주 + 일부 상업 및 업무 기능) |
|---|------|---|
| 2 | 상업지역 | 중심 (도심·부도심의 업무/상업기능의 확충 필요지역) 일반 (일반적인 상업/업무지역) 근린 (근린지역의 서비스 공금에 필요지역) 유통 (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에 필요지역) |
| 3 | 공업지역 | 전용 (중화학·공해성 공업 필요지역) 일반 (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필요지역) 준 (경공업 등 + 주거/상업/업무기능) |
| 4 | 녹지지역 | 보전 (도시자연환경·산림 및 녹지공간 보존 필요지역) 생산 (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가 필요지역) 자연 (도시녹지공간확보, 도시확산방지, 장래 도시용지공급 등 보존필요지역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 허용지역) |

1. 지역, 지구

1.3 용도지구 지정 및 세분(국토계획법 제37조)

- 지역 보완, 특성에 따라 부분적 지정
- 타지구와 중복 지정 가능

| 1 | 경관지구 |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(자연, 시가지, 특화) |
|----|------------|---|
| 2 | 고도지구 | 쾌적한 환경,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높이의 최고한도 필요한 지구 |
| 3 | 방화지구 |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|
| 4 | 방재지구 | 풍수해, 산사태, 지반붕괴 등 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(자연, 시가지) |
| 5 | 보호지구 | 문화재,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(역사문화환경, 중요시설물, 생태계) |
| 6 | 취락지구 | 녹지/관리/농림/자연환경보존지역, 개발제한/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(자연, 집단) |
| 7 | 개발진흥지구 | 주거/상업/공업/농림/유통물류/관광/휴양기능 등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(주거, 산업·유통, 해양·휴양, 복합, 특정) |
| 8 | 특정용도제한지구 |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,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|
| 9 | 복합용도지구 |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|
| 10 | 령으로 정하는 지구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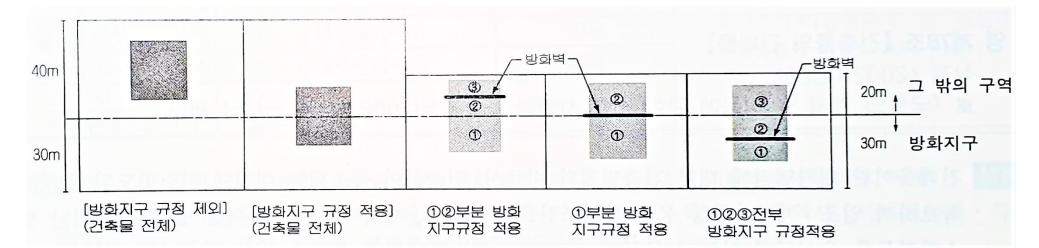
1. 지역, 지구

1.4 용도구역 지정(국토계획법 제38조~제40조의2)

| 1 | 개발제한구역 |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,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존 |
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 | 도시자연공원구역 |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제한 |
| 3 | 시가화조정구역 | 도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도모 |
| 4 | 수산자원보호구역 |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공유수면 및 인접한 토지 |
| 5 | 입지규제최소구역 |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과 거점 육성 필요 |

1.5 대지가 지역/지구에 걸치는 경우 조치(법54조)

- 1) 원칙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/지구,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 적용
- 2) 예외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: 동일(단,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구분 적용)
 -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 적용(단, 방화지구인 경우 위 내용 적용)
 - 주변 여건상 필요 시 해당 지자체 조례 의거



2. 건폐율, 용적률

2.1 용도지역 건폐율(법55조) (국계법77조, 령84조)

- 1) 건축물 건폐율
 -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
 - 대지 내 건축물 규모를 제한, 일조, 채광, 화재 시 연소 차단, 피난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평면적 제한규정

2) 용도지역 건폐율(최대한도) (조례로 세부 규정)

- 도시지역

·주거지역: 70%이하(전용 50%, 일반 50-60%, 준 70%)

·상업지역: 90%이하 (중심 90%, 근린 70%, 일반/유통 80%)

·공업지역: 70%이하

·녹지지역: 20%이하

- 관리지역

·보전/생산 : 20%이하, 계획: 40%이하

- 농림/자연환경보전지역: 20%이하

3) 건폐율 완화 (국계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)

2.2 용도지역 용적률(법56조) (국계법78조, 령85조)

1) 건축물 용적률

-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 비율
- 도시 공간 과밀화 방지, 채광, 통풍 등 공간 확보 위해 입체적 제한 규정

2) 용도지역 용적률(최대한도)

- 도시지역

·주거지역: 500%이하 ·상업지역: 1,500%이하

·공업지역 : 400%이하 ·녹지지역: 100%이하

- 관리지역

보전/생산: 80%이하, 계획: 100%이하

- 농림/자연환경보전지역: 80%이하

3) 용적률 완화 (국계법 제78조 제4항, 시행령 제85조 제7항)

- 3. 대지분할, 공지, 맞벽건축 등
 - 3.1 대지분할 제한(법57조, 령80조)
 - 1) 대지분할 규모(최소 규모 제한)
 -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지정
 - ·주거지역 : 60m² 이상 ·상업지역, 공업지역 : 150m²이상 ·녹지지역 : 200m² 이상 ·기타 : 60m² 이상

2) 대지분할 제한

-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기준에 미달되지 않게
- ·대지와 도로 관계 (법44조)
- ·건폐율, 용적률 (법55조, 56조))
- ·대지 안의 공지 (법58조)
- ·건축물의 높이 제한 (법60조)
- ·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(법61조)

- 3. 대지분할, 공지, 맞벽건축 등
 - 3.2 대지 안의 공지(법58조, 령80조)
 - 1)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(최대 6m 이하)

| 대상 건축물 | 조례 최소 기준 |
|--|--|
| 당해 용도 바닥면적 합 500m² 이상 공장 창고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| - 3m 이상 - 준공업지역 : 1.5m 이상 Cf. 전용/일반공업지역, 산업단지 제외 |
| 당해 용도 바닥면적 합 1,000m² 이상 판매/숙박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 다중이용하는 건축물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| - 3m 이상 |
| 공동주택 | - 아파트 : 2m 이상 6m 이하 - 연립 : 2m 이상 5m 이하 - 다세대주택 : 1m 이상 4m 이하 |
| 기타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| -1m 이상 -한옥의 경우 처마선 : 0.5m 이상 2m 이하 외벽선 : 1m 이상 2m 이하 |

2)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(최대 6m 이하)

| 대상 건축물 | 조례 최소 기준 |
|---|---|
| 전용주거지역(공동주택제외) | - 1m 이상 - 한옥의 경우 처마선 : 0.5m 이상 2m 이하 외벽선 : 1m 이상 2m 이하 |
| 당해 용도 바닥면적 합 500m² 이상 공장으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| - 1.5m 이상 - 준공업지역 : 1m 이상 Cf. 전용/일반공업지역, 산업단지 제외 |
| 당해 용도 바닥면적 합 1,000m² 이상 판매/숙박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| - 1.5m 이상 Cf. 상업지역 제외 |
| 공동주택 | - 아파트 : 2m 이상 6m 이하 - 연립 : 2m 이상 5m 이하 - 다세대주택 : 0.5m 이상 4m 이하 Cf. 상업지역 제외 |
| 기타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| - 0.5m 이상 |

- 3. 대지분할, 공지, 맞벽건축 등
 - 3.3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(법59조, 령81조)
 - 1) 맞벽건축, 연결 복도 대상
 - 대지안 공지(법58조), 일조권(법61조), 민법242조 이격 거리(0.5m) -> 적용 안 함(법58조)

| 맞벽 건축 | 대상 지역 | - 상업지역 - 주거지역(소유자간 합의 경우) - 도시미관, 한옥보전/진흥을 위해 조례 정한 구역 - 건축협정구역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|--|
| 연결복도, | 건축물과 건축물을 | 두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복도와 통로 설치 가능 | |
| 연결통로 | (지역, 용도 관계 없 | 역, 용도 관계 없음) | |

2) 맞벽/연결복도 구조

- 맞벽(50cm 이내 벽 from 대지경계)
- ·주요구조부 내화구조 · 마감은 불연재료 · 대상 건축물 용도, 맞벽 건축물 수/층수 등은 조례로 정함
- 연결복도(통로) : 건축사/구조기술사 안전 확인

| 주요구조부 | 내화구조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마감재료 | 불연재료 | |
| 너비/높이 | 각 5m 이하 | cf.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완화 가능 |
| 밀폐 구조 경우 | 벽면 1/10 이상 창문 설치 (지하층 환기설비설치시 예외) | |
| 건축물과 복도/통로 연결부분 | 자동방화셔터 or 방화문 설치 | |
| 연결복도 설치된 대지면적 합 | 국계법 영55조에 따른 개발행위 최대규모 이하 | r cf.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예외 |

cf. 연결복도 아래 도로 or 타인 토지 경우 → 도로점용허가 or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 요

4.1 건축물의 높이제한(법60조)

1)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

-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/공고할 수 있다
- 지정시 고려사항
 - ·도시/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
 - ·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 너비
 - ·해당 가로구역 상/하수도 등 시설 수용능력
 - ·도시미관 및 경관계획
 - 해당 도시 장래발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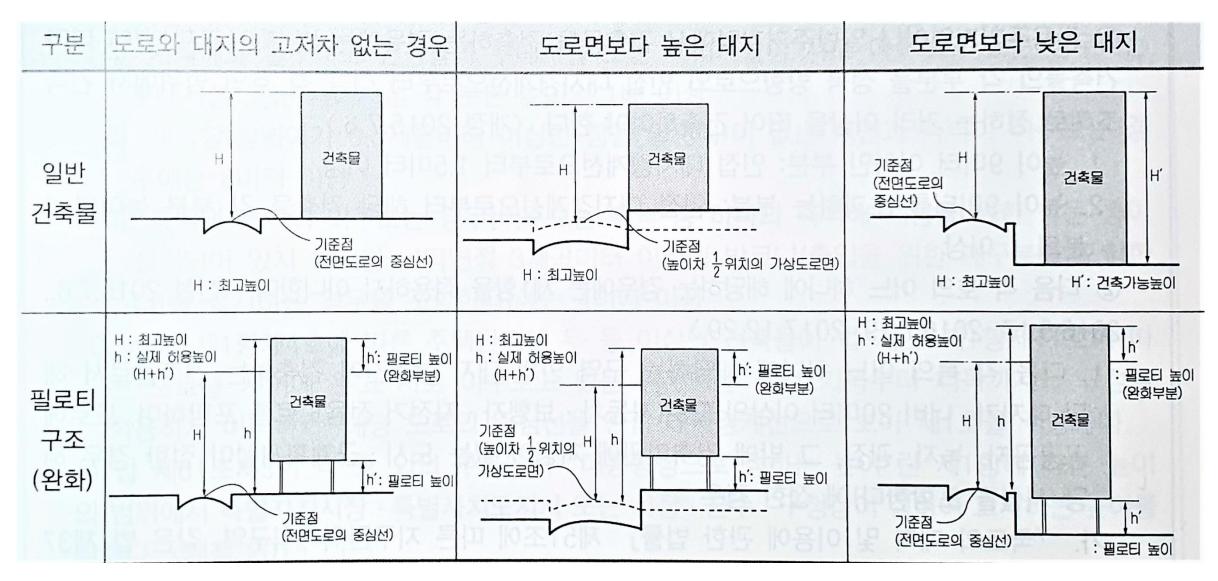
2) 최고 높이 지정절차

- 공고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을 거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음 eq. 지정/공고안작성(허가권자) → 공람(주민) → 지방 건축위원회심의 → 최고높이지정/공고(허가권자)

3) 최고 높이 완화

- **특별/광역시장은**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 시 조례로 최고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음
-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용도,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음
- 특별자치시장/도지사, 시장/군수/구청장은 완화적용 필요시 되는 대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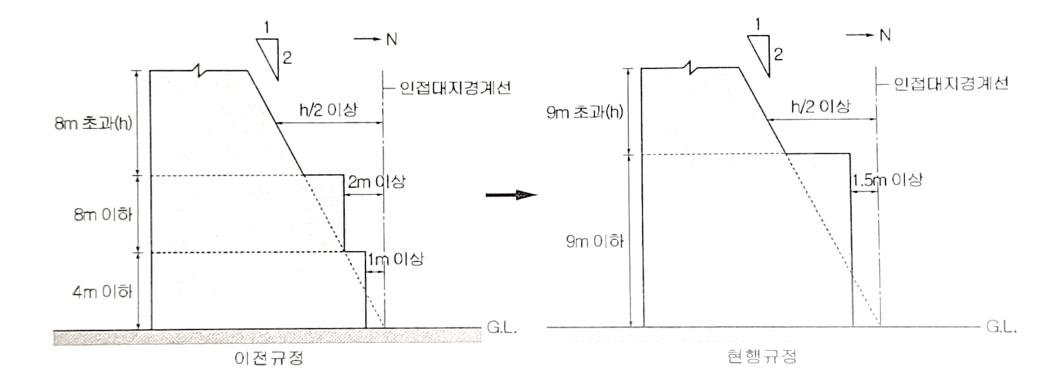
4.1 건축물의 높이제한(법60조)



- 4.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(법61조, 령86조)
- 1) 전용/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일조확보
 -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(2015.7.6 개정)(2023.10 개정 조례확인 필요)

| 높이 9m 이하 1.5m 이상 | |
|--|--|
| 높이 9m 초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/2 이상 | |

cf.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 대지간에는 예외



- 4.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(법61조)
- 2)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제한
 - -공동주택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이격 외에도 다음 규정 높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. (단, 일반/중심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제외)

- 채광 창문 등 방향의 높이 제한
- ·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cf. 예외: 근린상업지역, 준주거지역-4배 이하, 다세대주택 경우 1m 이상으로 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 이격 시
- ·도로, 공지, 하천, 광장, 철도 등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,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

- 건축물 간 마주보는 경우 높이 제한(인동간격)
- 동일 대지 내 마주보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규정으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
- ·단,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, 9~15시 사이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시 예외(그 거리 이상)

4. 건축물의 높이제한

4.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(법61조)

- 건축물 간 마주 보는 경우 높이 제한(인동 간격)

| |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5배(도시형생활주택0.25배) 이상 이격 |
|--|--|
| 마주 보고 있는 외벽간 간격 | 남측 건축물의 높이가 낮을 경우 높은 건축물 높이의 0.4배(도시형생활주택0.2배)와 낮은 건축물 높이의 0.5배(도시형생활주택0.25배)중 큰값 |
| | 부대/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|
| 채광창(창넓이 0.5m² 이상)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| 외벽간 거리를 8m 이상 |
|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(측벽 중 1개 측벽에 한해 채광 창문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바닥면적 3m² 이하의 발코니(출입개구부포함)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) | 외벽간 거리를 4m 이상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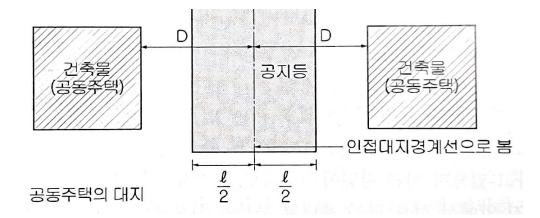
4.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(법61조)

- 일조권 적용시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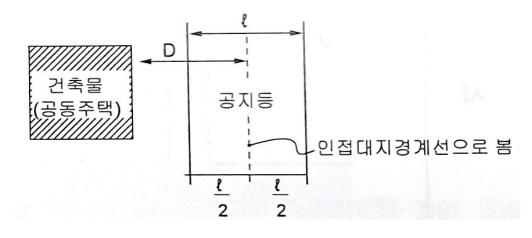


┗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봄

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잇는 경우



공동주택의 경우



4. 건축물의 높이제한

4.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(법61조)

- 일조권 규정 적용시 지표면 산정방법

정북방향 일조권(시행령 86조 1항)

| 구 분 |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A와 대지B가 상호 인접시 |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A와 인접대지B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→ 정북방향 | → 정북방향 |
| 예 시 | CHZIB | CHXIB |
| | 대지A 지표면 | CHAIA SEE |
| 지표면 (표시) | 대지A와 대지B의 평균수평면 | 대지A와 대지B의 평균수평면 |

채광방향 일조권(시행령 86조 2항)

| 구 분 | |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A와 대지B가 상호 인접시 |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A와 인접대지B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| |
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) | | → 채광방향 | → 채광방향 | |
| | 예 시 | CHXIB | ПЛВ | |
| | | CHAIA NHP | CHXIA SEZ XIED | |
| | 지표면 (표시)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A의 지표면 ※ 대지A와 대지B의 평균수평면이었으나 법개정으로 대지A의 지표면으로 변경됨 | |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A의 지표면 | |